김대환 교수님

학생들이 보내준 카톡으로 문제지를 보고 풀었는데 이미 답이 올라왔네요.

2013년 2차보다는 어렵고 2014년 1차보다는 쉬운 시험입니다.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. 형소법 김대환

2014.2차 경찰채용시험 형사소송법

1. ① 고소지정 10일이내 지정하여야 한다.

2. ㉡ 검찰항고 거친 경우 7일-- 거7다, 거7다

3. ③ 체포피의자는 피의자보석 안됨

4. ④ 관할지정은 검사가 신청, 피고인은 신청안됨

5. ㉣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불복 불가, ㉤ 지체없이 서면 통지

6. ① 사경피신은 적법성 내용인정

7. ③ 진술거부권행사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가중적 양형사유 가능

8. ① 출석보증인은 과태료만 가능, 감치는 안됨

9. ㉠ 조사자 증언제도 인정, ㉣ 수사과정 진술서는 312조 5항 적용

10. ③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
11. ② 3일이내의 항고로 불복

12. ㉡ 공판정 자백만 해당, ㉣ 자백보강법칙 적용

13. ③ 병합시 중한 벌금형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아니다.

14. ② 두 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가 된다.

15. ④

16. ④

17. ②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은 출석 가능

18. ③ 5,5,10,5

19. ④ 질병인 경우 공판절차정지는 하지만, 회복되었다고 공판절차 갱신은 안한다.

20. ④ 재심취하한자는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.